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4,760,288	10,942,809
일반회계	333,277,480	9,998,324
특별회계	31,482,808	944,484
기타특별회계	31,482,808	944,48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30,097	27,903
기반시설특별회계	38,791	1,16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8,505	2,35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835,486	85,065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367,430	581,023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24,000	6,72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36,799	7,104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17,981	3,539
상수도특별회계	5,052,545	151,576
수질개선특별회계	142,922	4,288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320,028	69,601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68,175	2,045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70,049	2,10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46,32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간주예산)